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. 8. 30 선고 2016가단71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8. 30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2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.
2. 피고들은 원고에게
가. 각 637,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5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
나. 2016. 1. 1.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에 의한 판결)

판사도우람

별지